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592

부칙 <제17014호,2000.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91호,2001. 7. 7.>(증권거래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 제5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 단서중 "주권 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 단서"를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7제1항제1호"로 한다.
 - 1. 주권상장법인간, 협회등록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증권 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 2.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 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 정한 가격
 - 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 3.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7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부칙 <제17716호,2002. 8.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1호,2002. 12. 5.>(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⑦내지36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297호,2004. 2. 28.>(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를 동항제35호로 하고, 동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③내지20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6호,2004. 12. 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도3	^도 과보유주주가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간접투	투자자산운용업법에	업무집행사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따른 /	사모투자전문회사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또는 !	투자목적회사인	충족할 것
경우	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1	투	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1	경	우(외국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1	[[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1	유	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1	ΙX	보이 100보이 20은 초과하여 비오하느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 |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 |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8736호,2005. 3. 8.>(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⑦내지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34호,200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22호,2006. 3. 2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또는「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⑨내지26 생략

부칙 <제20331호,2007. 10. 23.>(통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제17조제1항"을 "「통계법」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⑨ 부터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제20367호,2007. 1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53호,2008. 2. 29.>(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 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8호,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제1호ㆍ 제2호・제7항, 제5조의2제1항제2호・제4호・제5호・제6호, 제5조의4제2항, 제5조의5제2항, 제5조의6제1항・제 2항제2호・제4항, 제5조의7제1항제2호・제2항, 제5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제6호・제5항 전단・제7항 전단・제8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6조의3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 6조의6제2항・제3항, 제6조의7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8호,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제 4항,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2항제2호・제3호・제4항제1호・제2호, 제19조의 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호・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3호・제2항, 제22조제1항제3호・제2항제7호, 제 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제3호, 제24조제2항제3호・제3항제3호, 제24조의2제3항 후단・제5항, 제 24조의3제3항 단서・제5항・제7항제2호, 제24조의5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2항 단서·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8항, 제27조의2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 8호・제9호, 제31조제1항제4호・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4항,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3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마목 3) 단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가목・나목, 제5호라목, 별표 1의2 제1호 가목・나목・다 목 3) 단서, 제2호가목・나목, 제4호가목, 별표 2 제1호가목・나목・마목 단서・마목 (1) 단서, 제3호가목・나목, 제 5호가목 •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호, 제19조의2제5호,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위원회로부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⑴ 부터49 까지 생략

부칙 <제20947호,2008. 7. 2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铋 까지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거나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상장・등록"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5호 중 "「증권거래법」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8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이하 "증권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이하 "선물업자"라 한다),「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이하 "투자자문회사"라 한다) 및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이하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투자일임업자(이하 "투자의임업자"라 한다) 및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나. 자회사가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 래법」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 •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증권거래법」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3제4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 투자유한회사 ·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 투자유한회사 ·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에"를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증권업"을 "금융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구분란 및 요건란의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155호,2008.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2> 까지 생략

<17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4> 및 <175> 생략

부칙 <제21291호,2009. 2.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 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9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7제2항 각 호에 따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518호,2009. 5. 29.>(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한국정책금융공사법」
- ① 부터② 까지 생략

부칙 <제21765호,2009. 10.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3호 중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⑧ 부터③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76호,2009. 10.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98호,2010. 1. 1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8조,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20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계열회사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을 인수·취득하는 회사부터 적용한다.
- 제3조(자회사등 편입 신고의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 이후 최초로「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등의 적용례)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사외이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 제6조(신용공여한도 등의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의2제1항 · 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상 중도상환 금지 규정(이 영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신용공여 계약인 경우로 한정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5 까지 생략

4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93호,2010. 11. 15.>(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② 까지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은행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회사"를 "「은행법」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으로 한다.

③ 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509호,2010. 1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회사등 편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외이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77호,2010. 12. 30.>(법인세법 시행령)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부칙 <제22637호,2011. 1. 24.>(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보험업법」제2조제12호"를 "「보험업법」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보험업법」제2조제14호"를 "「보험업법」제2조제15호"로 한다.

④부터 ⑤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웹 까지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6 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659호,2013. 7.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제24697호,2013. 8. 2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을 "코스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0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9조의2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 "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7제2항 각 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7제3항 각 호"로 한다.

⑩부터③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177호,2014.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6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28조 및 제3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 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279호,2014. 3. 24.>(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16 부터3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777호,2014. 11. 24.>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제3항 · 제4항 및 제8항(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45호,2014. 12. 30.>(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⑩부터猀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038호,2015.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00호,2015. 10. 2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 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제36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 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6816호,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05호,2016. 5. 31.>(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기술보증기금법」

⑪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413호,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및 별표 7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7414호,2016. 7. 28.>(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항 제10호나목"을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른 내 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1조의5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2 중 "제17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 중 "절차 및 내용이 법,"을 "절차 및 내용이"로 한다.

제33조의4제5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란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의2"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로 한다.

별표 7 제6호 및 제41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자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8248호,2017. 8. 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별표 7 제53호의2, 별표 7의2 및 별표 8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구조조정기업의 계열회사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공동관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3조**(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보고의무 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 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4조제2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부칙 <제28382호,2017. 10. 17.>(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제29194호,2018. 9. 28.>(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269호,2018. 10. 30.>(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0893호,2020. 8.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3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934호,2020. 8. 1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⑤부터②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44호,2021. 2. 1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1696호,2021. 5. 1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1.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 2. 내부감사업무
- 3. 위험관리업무
- ② 생략

부칙 <제31861호,2021. 6. 29.>(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단서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32018호,2021. 9. 29.>(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91호,2021. 10. 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문, 같은 호 가목・나목,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제36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부터② 까지 생략

부칙 <제32274호,2021. 12.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⑲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호 및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로 한다.

제5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로 한다.

20 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449호,2022. 2. 17.>(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6 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112호,2022. 12. 20.>(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제33604호,2023. 6. 27.>(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또는"을 "(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로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을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및「보험업법」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913호,2023. 12. 12.>(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 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11호,2023. 12. 19.>(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④부터②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49호,2024. 4. 2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